

開 會 辭

金 哲 洙*

卒業準備와 開學準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本 學術세미나를 빛내주시기 위해 參席해주신 趙完圭 總長님을 비롯하여 여러 法科大學 學長님, 法學研究所長님, 教授님 그리고 法曹界 人士와 來賓 여러분, 대단히 感謝합니다.

오늘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가 文敎부의 研究費를 받아 우리 나라 法曹의 先進化와 法文化 發展을 위하여 뜻깊은 討論의 場을 마련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討論者를 보내주신 法院行政處, 法務部, 韓國法學院, 大韓辯護士協會, 韓國法學教授會 등 여러 機關에도 感謝를 드립니다.

돌이켜 볼 때 멀리는 우리 나라에 近代의 司法制度가 자리잡은 이후, 가깝게는 解放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法曹은 急激한 社會變化와 發展에 對應하여 많은 變貌를 겪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急變하는 國內外的 政治·經濟·社會·文化的 變化에 우리 法曹界가 適切하게 對應해 왔는가 反省해 보게 됩니다. 여러모로 先進으로 치닫고 있는 韓國에서 立憲主義와 法治主義가 올바르게 定着되어 우리 法曹界가 先進化隊列에 끼이게 되었는지, 國家發展段階에 合當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反省하게 됩니다. 韓國의 법조가 祖國先進化를 嚮導해야 할 막중한 任務를 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要請입니다. 法曹의 先進化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國民의 基本權保障과 法治主義는 有名無實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側面에서도 世界先進國家의 隊列에 加擔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法曹先進化의 課題는 制度的인 側面에서도 研究할 必要性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만, 法曹先進化의 核心은 역시 이를 움직이는 法曹“人”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法曹人을 어떤 方法으로 教育시켜서 어떤 程度의 資格 내지 素養을 갖추게 한 후에 얼마나 社會에 輩出시켜 어떠한 職域에서 어떠한 品質의 法律 서어비스를 提供하도록 할 것인가의 問題에 論議의 焦點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司法正義를 실현하고 國民의 人權을 保障하기 위하여서는 얼마만큼의 法曹人口를 輩出·維持시켜야 하는가 하는 테마는 法曹界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80年代에 들어와 司法試驗合格者의 劃期的 增員은 그와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法學研究所長)

같은措置의當否에 대한 열띤論議를 불러 일으켰고 그熱氣는 現在에도繼續되고 있는形便입니다. 또한 司法試驗合格者의 增員은 그措置 自體의 當否를 떠나서도 여러가지 問題들을 提起하고 있습니다.

大量輩出되는 法曹人의 資質問題, 그들을 受容할 수 있는 職域의 擴大問題 등은 先進法治國家實現이라는 時代的 要請과 함께 檢討의 對象이 되어 왔으며, 그러한 試圖의 一環으로서 法務部에서는 1983年 法務部政策諮問委員會의 分科委員會로서 法曹職能先進化研究分科委員會를 두고 法律 서어비스의 量的·質的 向上, 法曹人의 資質向上, 法曹의 奉仕機能 擴充 등의 主題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結論을 提示한 바 있으나 後繼措置 등이 未洽하였기 때문에 論難을 拂拭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適正한 法曹人口의 數字를 產出해 낸다는 것은 그 社會의 需要에 影響을 미치는 많은 變數들로 인하여 쉽지 않은 作業이며, 동시에 法曹人口의 數字가 우리 나라의 司法正義 내지 法治主義에 충실한 機能遂行 與否를 決定짓는 獨立變數로 作用할 것이기 때문에 그 解答을 찾기 위해서는 眞學한 研究가 必須的이라고 하겠습니다. 法曹先進化를 위한 適正法曹人口의 問題를 다룸에 있어 看過할 수 없는 또 하나의 研究對象은 法曹人의 養成에 기여하고 있는 法學教授라고 할 것입니다. 過去 法學과 法律實務는 전혀 無關한 兩極端의 要素인 것으로 이해 되기도 한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舊時代의인 思考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날 理論과 實務 兩側의 共通된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 純粹한 意味에서의 法學研究와 教育의 存在를 전혀 無視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法學의 實踐科學的 性格을 소홀히 보아 넘길 수 없으며, 現實적으로 專門法曹人의 大多數가 法科大學 出身이라는 점을 考慮할 때 法學研究 및 教育의 가장 重要한 主體인 法學教授의 資格과 適正數를 把握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相關關係에 있는 것이 法科大學의 學生數라고 할 것입니다. 法學教育의 主된 目標을 專門法曹人의 養成에 두느냐, 아니면 一種의 教養教育에 두느냐 등의 差異에 따라 法大學 生數와 法學教授陣의 量的·質的 變化가 惹起될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法曹의 性格變化로 歸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問題意識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의 法曹界는 近代의인 司法制度和 法學이 뿌리 내린 土臺 위에서 새로운 跳躍을 摸索해야 할 轉換期의 時點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그 동안 追求해 오고 達成한 社會·經濟的 成長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法的 秩序의 存在를 缺如한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法曹과 法學教育이 經濟的 先進化의 追認을 위한 道具로 轉落해서는 아니 되며, 法治主義와 基本權의 實質的 保障을 成就하도록 先導하는 보다 進步的인 立場을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法曹에의 문턱이 아직도 높게 생각되고 있는 우리의 現實속에서 現代法治國家의 理念에 비추어 보아 批判의 餘地가 充分한 保守性·消極性의 舊殼을 脫皮하여 適正·公正하면서 동시에 迅速·經濟的 理想에 충실한 法律 서어비스를 提供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는 것

이 眞正한 法曹先進化에 이르는 正道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專門法曹인과 法學教授의 適正한 數를 計算해내는 作業도 당연히 이와 같은 觀點下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法曹先進化와 그에 附隨되는 혹은 그것을 이끌어내는 適正한 法曹人口에 관한 論議는 對國民的 次元의 것이어야지 政策的·政略的 次元의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法曹先進化와 法曹人口」學術세미나는 眞正한 法曹先進化의 具體的 意味는 어떠한가, 그 定義에 合當한 法學教授, 判事, 檢事, 辯護士는 어떠한가 하며 그 適正數는 얼마이냐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나라 法治主義와 法文化的 發展에 조금이나마 寄與하는 契機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는 法曹의 先進化와 그를 이루기 위한 方案을 찾는 一貫된 努力의 一部分으로서 80年代에 들어서만도 「韓國의 法學과 法律實務」라는 主題의 學術會議(1981. 12. 5~6), 「韓國社會의 變化와 現代法學의 課題」라는 主題의 學術세미나(1986. 12. 5~6), 「社會變動과 類似法曹職能의 問題點」이라는 主題의 學術세미나(1987. 5. 2) 등을 開催하였읍니다. 그러나, 本格的으로 法曹先進化의 表題를 내걸고, 그것도 그 實現 與否의 重大한 關鍵이라고 할 수 있는 法曹인에 관한 研究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옹호하고 社會正義를 실현해야 할 法曹人의 使命·資格 등의 本格的 檢討에 앞서 이번에는 그 基礎作業으로서 法學教授와 法曹人의 適正人口를 알기 위한 研究와 討論의 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司法試驗合格者數에 관해서는 大法院, 法務部, 大韓辯協, 法科大學協議會, 法學教授會 등에서 個別的인 研究와 檢討가 있어 建議까지 하였읍니다만 法曹三者와 法學教授가 한 자리에 모여 討論하게 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法曹人口에 대한 斷定的 結論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研究의 基礎的·試論의 性格에 더욱 큰 意味를 附與하고 있습니다. 이 討論이 앞으로의 論議의 發展的 昇華의 契機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자리에 參席하신 法學教授, 判事, 檢事, 辯護士 여러분들의 面면을 뵈올때 本 세미나가 意圖하고 있는 所定の 目的은 充分한 結實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나라 法曹의 轉換期를 큰 跳躍의 契機로 삼을 수 있도록 隔意없는 問題提起와 討論을 통하여 先進國으로 가는 우리 社會의 要求에 適應하고 國民의 基本權保障을 先導할 수 있는 代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討論된 것을 土臺로 다시 研究하여 그 成果를 담은 論文과 그 동안의 司法制度에 관한 研究成果를 묶어 서울大學校 出版部에서 今年 6月 以內에 出刊할 豫定임을 알려드리며 여러분들의 協助를 期待합니다.

끝으로 本 學術세미나에 參加하신 여러 法曹人들과 來賓 여러분께 다시 한 번 感謝를 드리며, 부디 이 세미나가 우리 法曹界를 위하여 意味있고 所望스러운 것이 되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開會辭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8年 2月 23日